

해 양 수 산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고성군

내 용

강원도 고성군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료·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현황

년 도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957,670	287,300	287,300	383,070
2013	141,000	42,300	42,300	56,400
2014	382,670	114,800	114,800	153,070
2015	434,000	130,200	130,200	173,6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시설을 당초 목적인 용도 외 사용, 시설의 중요한 변경, 시설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양도·교환·임대·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사후관리 주체로써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를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인 5년 이내에 어선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성군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 받은 ○○○ 등 5명이 어선기관 교체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인에게 어선을 매도하였는데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기관교체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년 도	보 조 사 업 자	준 공 일	매 도 일	사 업 비(천 원)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82,592	22,467	22,467	37,658
2013	○ ○ ○	2013.7.25	2014.5.19	21,600	4,860	4,860	11,880
	○ ○ ○	2013.9.10	2015.12.21	14,164	4,249	4,249	5,666
	○ ○ ○	2013.9.10	2015.6.30	14,164	4,249	4,249	5,666
	○ ○ ○	2013.9.10	2016.5.7	14,164	4,249	4,249	5,666
2015	○ ○ ○	2015.9.7	2015.11.6	18,500	4,860	4,860	8,780

한편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및 양양군은 유류절감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등록부에 사후관리기간 5년 이내에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매도, 양도, 담보제공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추후 유류절감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요장비를 교체한 어선에 대해서는 재산사용 제한 조건을 어선등록부에 명시하는 등 사전 승인 없이 어선이 매매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